

#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시행일 : 2025. 06. 01.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‘본교’라 함) 학부 교직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) ① 교직과정의 학생지도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  
② 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교직학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③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.

## 제2장 교직학사운영위원회

제3조(설치 운영) ① 교직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는 캠퍼스별로 운영하며, 교무처 교직팀에서 담당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, 교직팀 지도교수의 당연직 위원과 교무처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, 간사는 교직팀 소속직원으로 한다.  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 
④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괄하며,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기능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교직과정 시간표 편성 등에 관한 사항
  2. 교직과정 교강사 배정 등 인사에 관한 사항
  3.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장 교원양성위원회

제6조(설치운영) 본교 교원양성과정(학부 및 교육대학원)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하며,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직팀에서 담당한다.

제7조(구성) ①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하여야 한다.  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며, 서울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.  
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기록, 보관하며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직팀 소속직원으로 한다.  
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직 변경 시 자동 승계하며,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기능) ①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교직과정이수예정자/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2.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항

3.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  4.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
  5. 기타 위 호에 부수하는 사항
-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4장 교직과정 선발 및 이수

제9조 (교직과정 설치학과)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(전공)는 선발인원 및 자격증 표시과목명은 [별표1] 교직과정 설치학부(과)(전공) 및 승인현황과 같다.

- 제10조 (이수예정자 선발)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[별표1]의 교직과정 설치 학부(과)(전공)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자 중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.  
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한 학생 중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 성적, 인성, 적성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[별표1]에서 정한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.  
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, 전과한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,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  
④ 편입학한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. 단, 전적대학에서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교직이수가 가능하며, 간호학과(야)는 교직이수 선발자에 한하여 가능하다.

- 제11조 (교직과정의 이수)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‘교원자격검정령’ 및 ‘동 시행규칙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 학점과 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  
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은 [별표2]와 같다.  
③ 표시과목별 전공 및 교직과목은 교직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.

- 제12조 (교직복수전공과정의 이수)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 복수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교직복수전공 이수 신청을 하여 선발되어야 한다.  
② 교직복수전공과정 운영 대상학부(과) 또는 전공분야 및 선발인원은 ‘교원자격검정령’ 및 “동 시행규칙”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.  
③ 교직복수전공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은 [별표2]와 같다.  
④ 제1전공 학위와 제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교직복수전공 무시험검정을 실시한다.  
⑤ 편입학한 자는 교직 복수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.  
⑥ 교직복수전공은 동일 교원자격 종목 간에 한하여 허용한다.  
⑦ 교직복수전공과정의 선발인원은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.  
⑧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학과 및 다전공 이수가 금지된 전공은 복수전공과정으로 이수할 수 없다.

- 제13조 (교직연계전공과정의 이수) ① 교직연계전공과정과 관련학부(과)는 다음과 같다.  
가. 통합사회 : 문과대학 사학과,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, 이과대학 자리학과  
나. 통합과학  
1. 서울캠퍼스 : 이과대학 물리학과, 이과대학 화학과, 이과대학 생물학과  
2. 국제캠퍼스 : 공과대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,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, 응용과학대학 응용물리학과,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,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 
② 교직연계전공과정 이수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중, 통합사회는 제1전공으로 일반사회, 자리, 역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, 통합과학은 제1전공으로 물리, 화학, 생물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로 한다.  
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 교직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복수전공 신청 기간에 이수 신청을 하여 선발되어야 한다.  
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제2전공 이상으로 통합사회 또는 통합과학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한 경

우 복수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.

- ⑤ 교직연계전공과정은 [별표2]의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률 충족하여야 한다.
- ⑥ 교직연계전공의 경우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2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, 졸업학점에는 중복하여 산입하지 않는다.
- ⑦ 교직연계전공과정의 전공교육과정은 교직교육과정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.
- ⑧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할 수 없다.

제14조 (교육실습) ①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학교현장실습 신청은 학교현장실습 직전학기 소정기간에 교육실습신청서 및 실습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교직 복수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1전공으로 1회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교육봉사활동 기간은 교직과정 선발이후부터 졸업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5장 교원자격무시험검정

제15조 (절차 및 수여조건) ①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학기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건교사 : 간호사면허증
2. 영양교사 : 영양사면허증

- ③ 졸업요건 및 제11조 2항에서 정한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을 모두 통과한 자에게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.

제16조 (자격증 발급 제한) 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요건을 충족하여도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.

- ② 교직복수전공자로 제1전공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복수전공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하였다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③ 신설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신입학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거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타 학과 학생이 해당 학과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다.
- ④ 초.중등교육법 제21조2에 따른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다.

제17조(준용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교원자격검정령” 및 “동 시행규칙”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1984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구규정에 의거·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본 규정 제25조(자격증 발급)의 사항은 2001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본 규정 제16조(자격증 발급 제한) 4항의 사항은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교직과정 설치학부(과)(전공) 및 승인 현황

### 교직과정 설치학부(과)(전공) 및 승인 현황

○ 서울캠퍼스

자격종별	표시과목	대학/학부(과)/전공	2025	2024	2023	2022	2021	2020
중등(2급)	국어	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	5	5	5	5	5	5
	역사	문과대학 사학과	3	3	3	3	3	3
	영어	문과대학 영어영문학	3	3	3	3	3	3
		문과대학 응용영어통번역학과	3	3	3	3	3	3
	일반사회	정경대학 경제학과	2	2	2	2	2	2
	상업	경영학부 경영학과	2	2	2	2	2	2
	관광	호텔관광대학 관광학부 관광학과	학과명칭변경		3	3	3	3
		호텔관광대학 관광·엔터테인먼트학부 관광학과	3	3	-	-	-	-
	조리	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 조리서비스경영학과	학과명칭변경		2	2	2	2
		호텔관광대학 조리&푸드디자인학과	2	2	-	-	-	-
	수학	이과대학 수학과	4	4	4	4	4	4
	물리	이과대학 물리학과	4	4	4	4	4	4
	화학	이과대학 화학과	4	4	4	4	4	4
	생물	이과대학 생물학과	5	5	5	5	5	5
	지리	이과대학 지리학과	4	4	4	4	4	4
	음악	음악대학 작곡과	1	1	1	1	1	1
		음악대학 성악과	3	3	3	3	3	3
		음악대학 기악과	7	7	7	7	7	7
	미술	미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전공	1	1	1	1	1	1
		미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	3	3	3	3	3	3
		미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	1	1	1	1	1	1
	무용	무용학부 한국무용전공	2	2	2	2	2	2
영양교사(2급)	-	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	2	2	2	2	2	2
보건교사(2급)	-	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	8	8	8	8	8	8

		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(야)	6	6	6	6	6	6
--	--	----------------	---	---	---	---	---	---

※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 : “교직과정 선발년도-1”

○ 국제캠퍼스

자격종별	표시과목	대학/학부(과)/전공	2025	2024	2023	2022	2021	2020
중등(2급 )	환경	공과대학 환경학및환경공학과	3	3	3	3	3	3
	수학	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	3	3	3	3	3	3
	물리	응용과학대학 응용물리학과	3	3	3	3	3	3
	화학	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과	3	3	3	3	3	3
	식물자원·조경	예술·디자인대학 환경조경디자인학과	3	3	3	3	3	3
	스페인어	외국어대학 스페인어학과	2	2	2	2	2	2
	중국어	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	3	3	3	3	3	3
	일본어	외국어대학 일본어학과	3	3	3	3	3	3
	영어	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어문전공	4	4	4	4	4	4
		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문화전공	2	2	2	2	2	2
	의상	예술·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학과	3	3	3	3	3	3
	연극영화	예술·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	3	3	3	3	3	3
	체육	체육대학 체육학과	7	7	7	7	7	7
		체육대학 태권도학과	7	7	7	7	7	7

※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 : “교직과정 선발년도-1”

[별표2]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

###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

#### 1. 중등2급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
구분	2018학년도 입학자 ~ 2023학년도 입학자 이전	2024학년도 입학자부터~
전공과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</li> <li>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	좌동
교직과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</li> <li>-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</li> <li>- 교육실습 4학점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</li> <li>- 교직소양 6학점(4과목) 이상</li> <li>- 교육실습 4학점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
성적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전공과목 : 75/100점 이상</li> <li>◦ 교직과목 : 80/100점 이상</li> </ul>	좌동
교직적성및인성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2회 이상</li> </ul>	좌동
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2회 이상</li> </ul>	좌동
성인지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2회 이상</li> </ul>	좌동
면허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보건교사 : 간호사 면허증</li> <li>◦ 영양교사 : 영양사 면허증</li> </ul>	좌동

※ 상기 표와 교육부의 연도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과 상이할 경우, 교육부 합격 요건이 선행됨

#### 2. 교직복수전공 이수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(2022학년도 입학자 이후)

구분	기준	비고
전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</li> <li>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	
성적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전공과목 : 75/100점 이상</li> </ul>	
면허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영양교사 : 영양사 면허증</li> </ul>	